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8일, 엄셋별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6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 보전과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2)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3)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6조 ~ 안 제7조)
- 4)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안 제8조)
- 5)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6)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쾌적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정의규정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하천공간을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4조)

○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양천으로 명시함

다)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안 제8조)

○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체육, 학습, 편의 조경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함

라)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안 제9조)

○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존과 이용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공생하는 하천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